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이용 안내

CSO24가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대응 기능

차수별·업체별 계약서 및 재위탁 통보서 간편 다운로드

1차~N차 재위탁 직관적인 트리 구조 제공

차수별 현황 및 통계자료 제공

개인, 법인 사업자 유형 및 휴·폐업 여부 보고용 엑셀 지원



위탁계약서 및 재위탁 통보서 다운로드 화면

거래처 계약서 전체보기

CSO24 회원 중 [] 를 제약회사 거래처로 설정 후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설정한 날짜 기간 기준으로 계약된 계약서를 다운로드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 다운로드 버튼은 용량 때문에 계약서 500개씩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계약일 기준 기간 검색

상단 검색 영역에서 계약일 기준 기간을
 선택 후 검색합니다.

3 일괄 다운로드

필요 시 개별 다운로드 또는 상단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상태 회사명 검색분류 검색어

계약일 2024-01-01 ~ 2026-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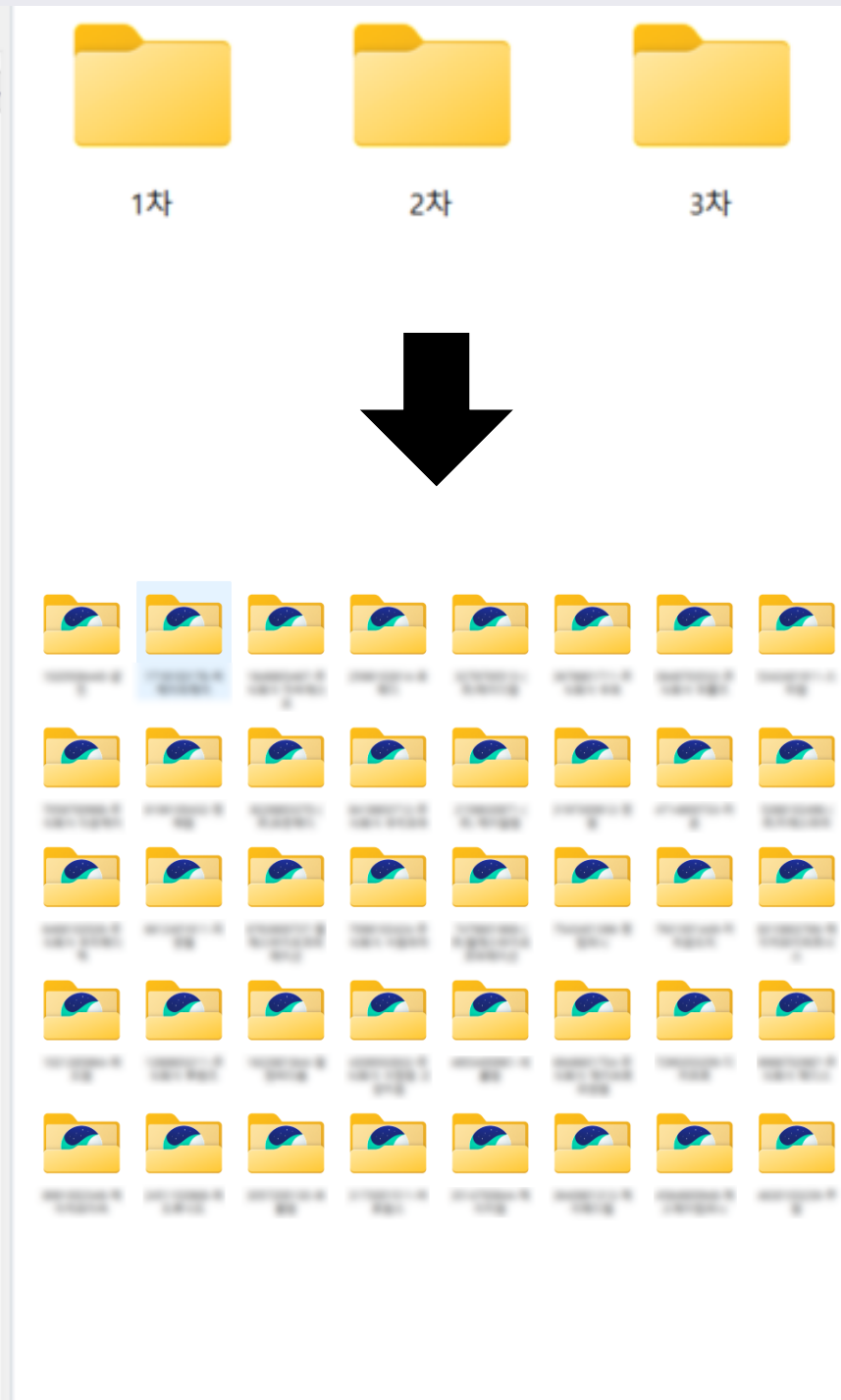
NO	제목	갑		을		발송일	계약일	계약서		재위탁통보서		상태	
		사업자등록증다운로드	신고증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다운로드	신고증다운로드			업체명 사업자번호	신고증 번호 CSO교육 발급번호	업체명 사업자번호	신고증 번호 CSO교육 발급번호		프린트
6363	판촉영업 위탁 계약서					2026-03-12	2026-03-12	<input type="button" value="프린트"/>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input type="button" value="프린트"/>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정상계약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메모"/>
6362	판매촉진업 세부 운영 지침					2026-03-12	2026-03-12	<input type="button" value="프린트"/>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input type="button" value="프린트"/>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정상계약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메모"/>
636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 서약서					2026-03-12	2026-03-12	<input type="button" value="프린트"/>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input type="button" value="프린트"/>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정상계약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메모"/>

2 조회된 목록 확인

조회된 목록에서 계약서 및 재위탁 통보서를
 확인합니다.

(재)위탁 관리 - 거래처 계약서 확인 - 거래처 계약서 모두보기에서 위탁계약서, 재위탁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신고증 등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계약자료는 언제든지 개별 또는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위탁계약 제출자료 폴더 구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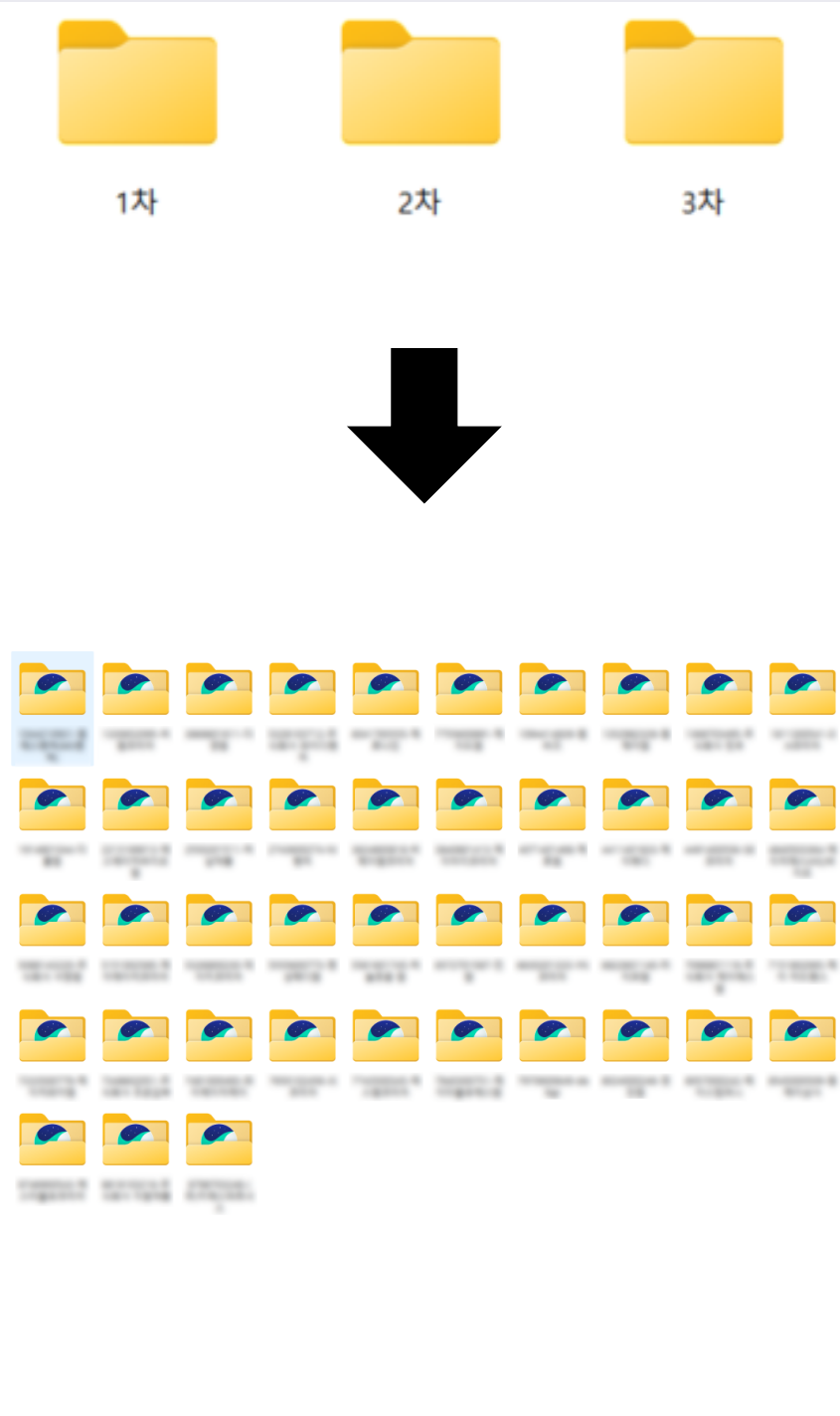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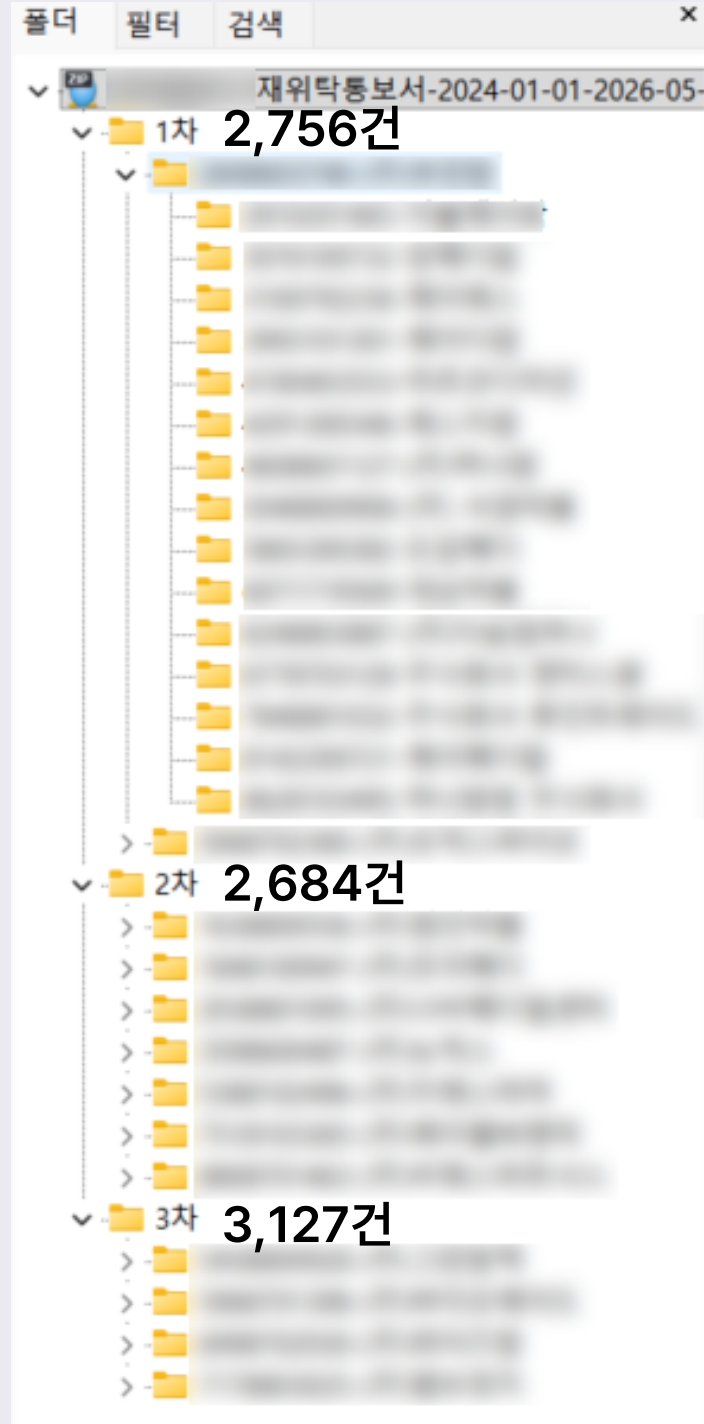


[계약사명]-계약서-2024-01-01~2026-05-08.zip

- ├── 1차
 - | └── [1차 CSO 업체 폴더]
 - | | └── [해당 업체와 계약한 하위 업체 폴더]
 - | | | └── 1차 업체와 하위 업체와의 계약서
 - | | |
 - | | └── ...
 - | └── ...
 - ├── 2차
 - | └── [2차 CSO 업체 폴더]
 - | | └── [해당 업체와 계약한 하위 업체 폴더]
 - | | | └── 2차 업체와 하위 업체와의 계약서
 - | | |
 - | | └── ...
 - | └── ... - └── 3차(같은 구조)
 - | └── ...

상위 폴더는 재위탁 차수(1차·2차·3차...N차) 기준으로 구성되며,
각 차수별 폴더 내에서 업체별 위탁·재위탁 관계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제출자료 폴더 구조 안내



판촉영업 위탁 계약서

(이하 "회원사"라 한다)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판촉영업 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사"가 "품목허가권자(구체적인 사항은 제2조제4항에 의한다.)"로부터 수탁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을 "회원사"가 대행함에 있어서 상호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판촉영업 활동과 위탁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판촉영업 : "회원사"가 "위탁사"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2. 제품 : "위탁사"가 "회원사"에 판촉영업을 위탁하는 의약품, 상품품 의미한다.
3. 품목허가권자 : "위탁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자로서, 위탁·재위탁 계약을 통하여 "위탁사"에게 적법하게 판촉영업을 수행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4. 재수탁사 : "회원사"가 "위탁사"로부터 수탁한 판촉영업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를 위임한 제3자를 말한다.
5. 판촉영업 위탁 수수료 (이하 "수수료") : "회원사"의 판촉영업 결과에 대하여 "위탁사"가 "회원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6. 처방 증빙 자료 (이하 "처방 자료") : "회원사"가 수행한 판촉영업 활동의 증빙으로서 수수료 청구를 위한 근거자료를 의미한다.
7. 서면 : 본 계약에서 "서면"이라 함은 문서 파일,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3조 【판촉영업의 범위】

1. "회원사"가 판촉영업을 수행하는 제품은 별도의 부속합의서나 변경계약서 등(이하 "부속합의서")을 작성하여 정한다.
2. "회원사"는 본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사"와 사전에 거래 가능여부가 협의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판촉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3. "회원사"는 다음과 같은 판촉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1) 제품 설명 : 학술 근거 자료 및 제품의 효능, 이상반응 전달 등
 - 2) 판촉영업 대상처 개발 및 관리
 - 3) 기타 "위탁사"와 사전 협의한 판촉영업 활동
4. "회원사"의 판촉영업 활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부당한 고가격·인원인위)을 위반하는 행위
 - 2) 약사법,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 3) "위탁사" 또는 "품목허가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및 "회원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위탁사" 또는 "품목허가권자"에 대한 조사나 제소 등 직·간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전 항 각 호의 법령 및 운용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운용기준을 따른다.
6. "회원사"가 판촉영업의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결정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탁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전 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판촉영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회원사"는 이를 즉시 "위탁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재수탁사 관리·감독】

1. "회원사"는 판촉영업자로서 약사법에 따라 판촉영업자 신고, 교육 이수,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 보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의 하위 조항에 따른다.

2. 본 조의 하위 조항과 관련된 약사법 등 관계법령 및 운용 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 및 운용 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1. "회원사"는 관할 보건소에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고, 본 계약 체결 시 "위탁사"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출한다.
2. "회원사"는 폐업,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 신고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 【교육 이수】

1. "회원사"의 대표자와 판촉업무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판촉영업자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수수료 등 근거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원사"는 "회원사"의 대표자, 이사 및 판촉 영업 종사자(이하 "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야 하고, 조직변동, 채용 등 종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종사자를 충분히 교육·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4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1. "회원사"는 약사, 한의사,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이하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회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출보고서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를 누락하지 않는다.
2. "위탁사" 또는 "회원사"가 관련 국가기관 내지 국가기관이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출보고서(약사법 제47조의2 제3항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위탁사"가 "회원사"의 전 항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는 "회원사"에게 지출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원사"는 단일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경우 1회 10만원 이하, 월 4회 이하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사"는 그 외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5조 【판촉영업의 재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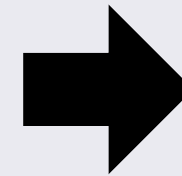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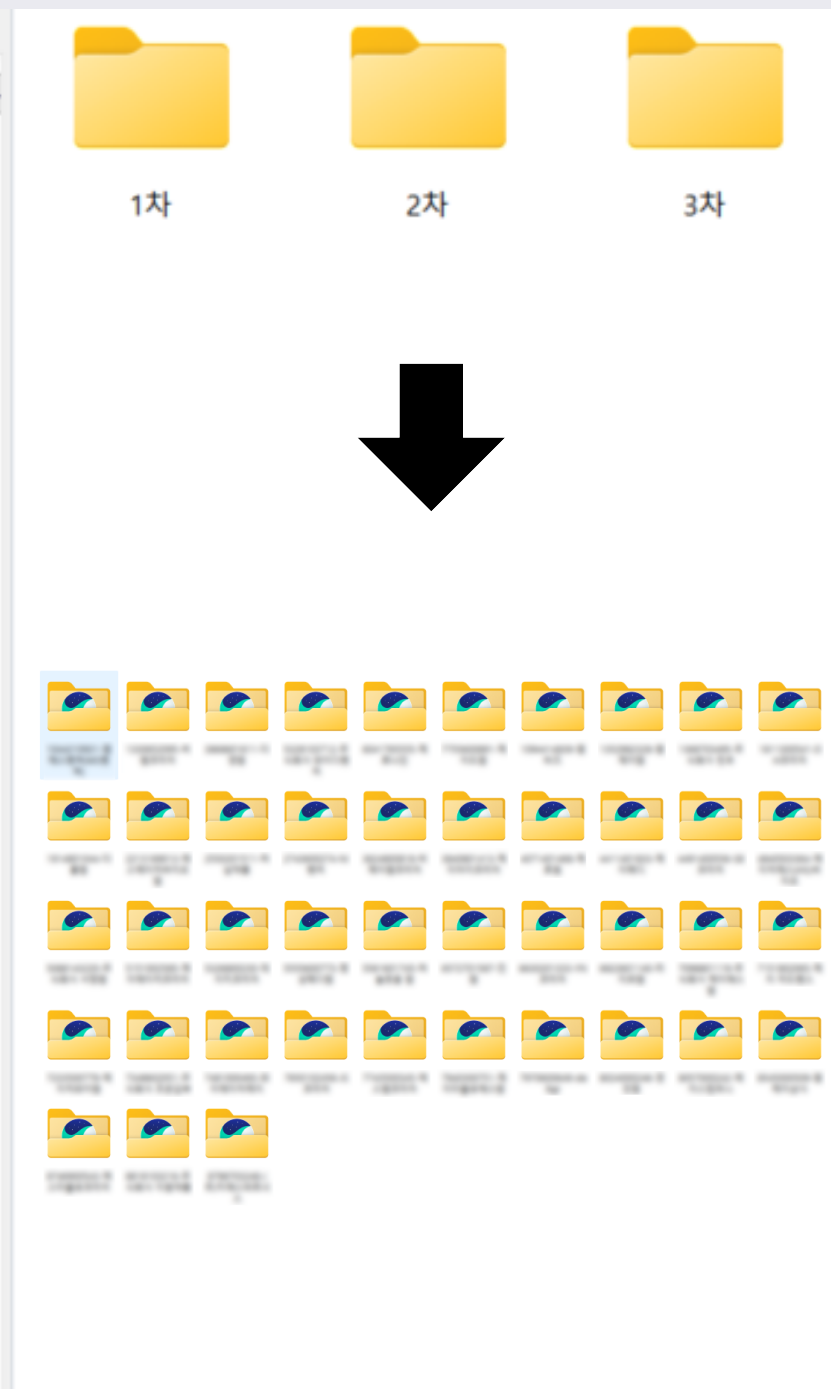
1. "회원사"는 "위탁사"로부터 수탁한 판촉영업을 제3자(이하 "재수탁사")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할 수 있는 판촉영업의 범위는 제3조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사"가 "재수탁사"에 재위탁한 경우, "회원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1) 판촉업무 위탁 내용, 제품·수수료 변경 등 본 계약 또는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2) "재수탁사"의 폐업, 행정처분 확정 등 판촉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 3) "재수탁사"가 판촉영업자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
 - 4) "재수탁사"를 변경한 경우
4. "회원사"는 "재수탁사"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변경 체결할 경우,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체결·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에 첨부된 "수탁자의 재위탁통보서"와 함께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품목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사"가 "재수탁사"와 위탁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본 조 제4항에 의한다.
6. 본 조에 관련된 약사법 제46조의2 내지 제47조, 제47조의2 법령 및 운용 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 및 운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재수탁사 관리·감독】

1. "회원사"는 "재수탁사"로 하여금 본 계약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회원사"와 동일한 의무와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며, "재수탁사"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기준으로 N차 폴더가 생성되며, 해당 폴더 하위에는 갑의 사업자번호-회사명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후 그 하위에 을의 사업자번호-회사명 폴더가 생성되고, 해당 폴더 내에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통보서 제출자료 폴더 구조 안내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 <신설 2024. 10. 18.>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

의약품 공급자(위탁자) 명		
재위탁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수탁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재위탁 사유	판매 촉진
재수탁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재수탁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재위탁 내용	의약품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	첨부서류 재위탁계약서 내용에 포함
	계약기간	2025-07-15 ~ 2026-07-14
	기타 (재수탁자 교육 이수 여부 등)	2025년 10월 19일 까지 교육이수 예정

[약사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판매촉진 업무의 재위탁 사실을 통보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수탁자 : 


(서명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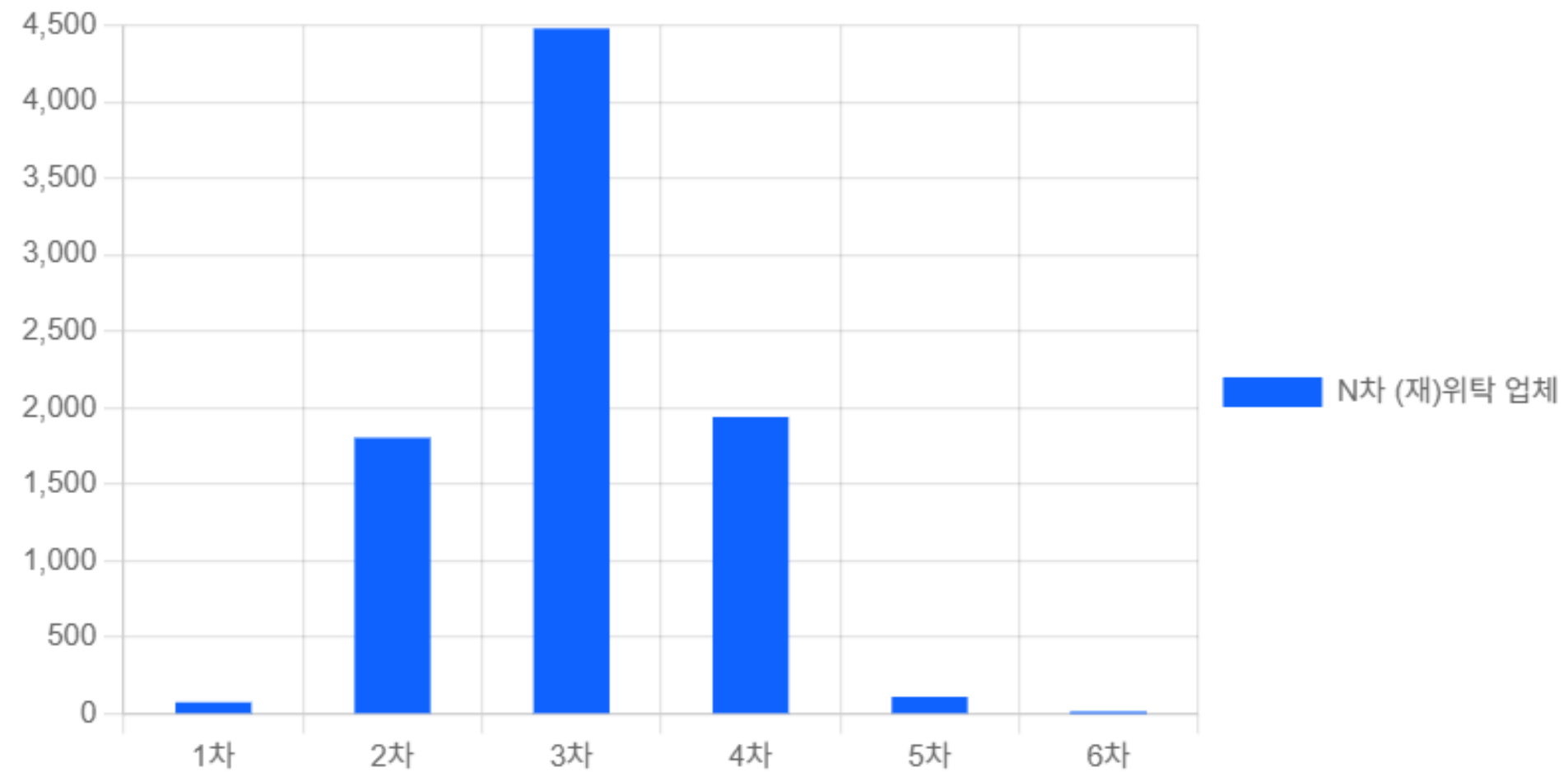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재위탁계약서 사본 1부
------	--------------

갑 기준으로 N차 폴더가 생성되며, 해당 폴더 하위에는 갑의 사업자번호-회사명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후 그 하위에 을의 사업자번호-회사명 폴더가 생성되고, 해당 폴더 내에서 재위탁 통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차별 위탁계약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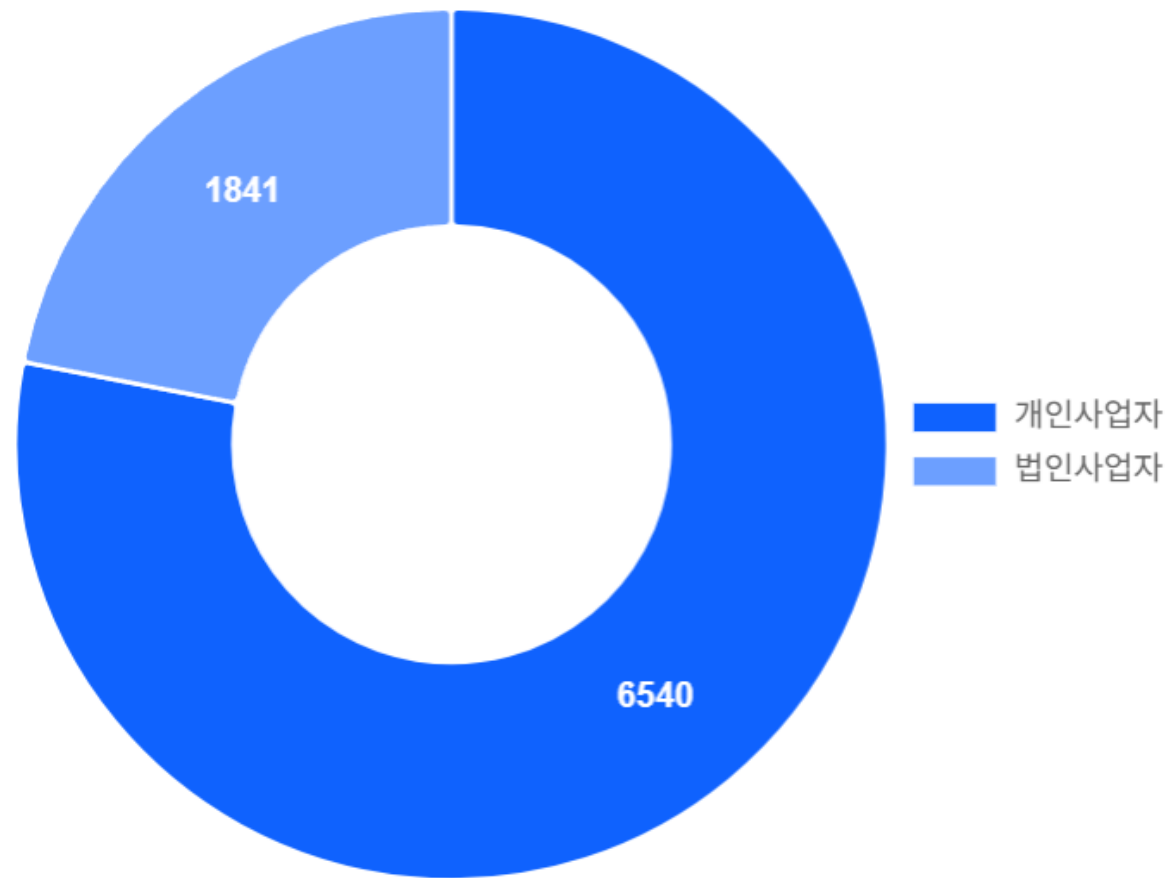
 N차 (재)위탁 통계



로그인 즉시 메인 홈 화면에서 N차별 위탁계약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수별 업체 분포와 재위탁 구조를 그래프로 제공해 관리 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

사업자 유형 확인 기능

N차 (재)위탁 사업자 종류 통계



회사명↑	상태	CSO교육상태	사업자종류	회사명	Q
<input type="checkbox"/>	NO	그룹	회사명 사업자 번호	신고증 번호 CSO교육 발급번호	
<input type="checkbox"/>		-	(법인)		
<input type="checkbox"/>		-	(법인)		
<input type="checkbox"/>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개인·법인 등 사업자 유형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차 재위탁 구조 내 유형별 통계까지 제공해 계약·정산 대상 관리와 내부 보고 업무를 효율화합니다.

휴/폐업 실시간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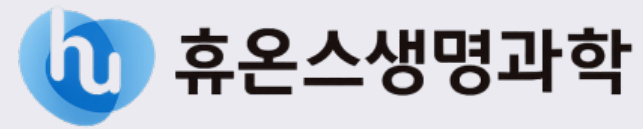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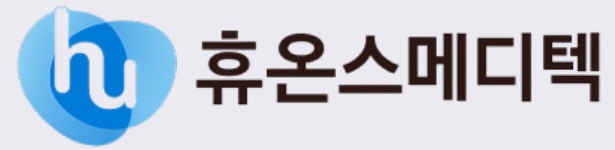
휴/폐업 거래처 더보기

상호명	사업자번호	상태
국세청	1234567890	폐업
한국투자증권	9876543210	폐업
한국투자증권	1234567890	폐업
한국투자증권	9876543210	폐업

CSO교육상태 ▾ 폐업 ▾ 재위탁여부 ▾ 사업자종류 ▾ 회사명 Q 검색초기화 **엑셀출력**

국세청 API 연동을 통해 병·의원 및 거래처의 휴·폐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휴·폐업 현황은 엑셀로 내려받아 내부 검토 및 제출자료 정리에 활용 가능합니다.

CSO24 도입 제약사 현황



BORYUNG



Theragen



감사합니다

THANK YOU

뒤섞인 계약서와 통보서를 단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CSO24에서는 차수별·업체별 DB로 구조화하여 보관·관리 가능합니다.

도입문의 - 1544-5734